

<인터넷 팝업 정보 푸시 서비스 관리규정(의견수렴안)> 의견수렴 통지

* 국가인터넷정보공공실, 의견수렴 기간: 2022년 3월 2일 ~ 3월 17일

* http://www.cac.gov.cn/2022-03/02/c_1647826956995841.htm

인터넷 팝업 정보 푸시 서비스 관리규정

(의견수렴안)

제1조 인터넷 팝업정보 푸시서비스를 규범화하고, 국가의 안전과 공공의 이익을 수호하며, 국민, 법인, 기타 단체의 합법적인 권익을 보호하고, 산업의 건전하고 질서있는 발전을 촉진하기 위해, <중화인민공화국 네트워크 안전법>, <중화인민공화국 미성년자 보호법>, <중화인민공화국 광고법>, <인터넷 정보서비스 관리방법>, <인터넷 뉴스 정보서비스 관리규정>, <인터넷 정보 콘텐츠 생태계 관리규정> 등의 법률 법규에 근거하여 본 규정을 제정한다.

제2조 중화인민공화국 역내에서 운영체제, 단말기, 애플리케이션, 웹사이트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 인터넷 팝업정보 푸시서비스를 제공할 시 본 규정을 준수해야 한다.

본 규정에서 말하는 인터넷 팝업정보 푸시서비스란 운영체제, 단말기, 애플리케이션, 웹사이트 등을 통해, 메시지가 팝업되는 창문페이지 방식으로 인터넷 사용자에게 제공하는 정보 푸시 서비스를 말한다.

본 규정에서 말하는 인터넷 팝업정보 푸시서비스 제공자란 인터넷 팝업정보 푸시서비스를 제공하는 운영체제, 단말기, 애플리케이션, 웹사이트 등의 소유자 또는 운영자를 말한다.

제3조 인터넷 팝업정보 푸시서비스는 법령을 준수하고, 올바른 정치 방향과 여론 지향, 가치 지향을 견지하며, 사회주의 핵심 가치관을 고취시키고, 건전한 양질의 팝업정보 콘텐츠를 전송하여, 긍정적이고 건전한 인터넷 문화를 발전시켜야 한다.

제4조 인터넷 팝업정보 푸시서비스 제공자는 정보 콘텐츠 보안관리 주체의 책임을 이행하고, 건전한 정보 콘텐츠 심사, 생태계 관리, 네트워크 보안, 데이터 보안, 개인정보 보호, 미성년자 보호 등의 관리 제도를 마련하여야 한다.

제5조 인터넷 팝업정보 푸시서비스는 다음의 요구사항을 엄격히 준수하여야 한다.

(1) 긍정적인 에너지를 전파하여, 사회주의 선진문화를 고양시킨다. 진취적이고 건전한 콘텐츠

를 적극적으로 전송하여, 사회주류의 가치관과 도덕문화로 사람들의 마음과 사회를 윤곽하게 한다.

(2) <인터넷 정보 콘텐츠 생태계 관리규정>이 규정한 위법 또는 불량 정보, 특히 악의적인 운세보기 조작, 프라이버시 스캔들, 사치 과시, 추잡한 관심사·분장 등 미풍양속에 위배되는 콘텐츠를 전송해서는 안 된다. 어떤 화제와 관련된 구문을 집중적으로 전송하거나 악의적으로 퍼뜨려서는 안 된다.

(3) 인터넷 뉴스 정보 서비스의 허가를 받지 않고는 뉴스 정보를 팝업 전송할 수 없으며, 팝업 푸시 정보가 기타 인터넷 정보 서비스와 관련이 있어, 법률에 따라 관련 주관 부서의 심사 통과 또는 허가를 받아야 하는 경우, 관련 주관 부서의 심사를 통과하거나 관련 허가를 받아야 한다.

(4) 뉴스 정보를 팝업 전송하려면, 국가인터넷정보공공실에서 공표한 최신판 <인터넷 뉴스정보 원고 공급원 기관 명단>에 근거하여 실행해야 하고, 범위를 벗어나 전재해서는 안 되며, 제목 원뜻과 내용을 왜곡, 변조해서는 안 되고, 뉴스 출처 추적 가능성과 뉴스 정보의 진실성, 객관성, 전면성을 보장해야 한다.

(5) 팝업 푸시 정보의 다양성을 높이고, 뉴스 정보와 수직 영역의 콘텐츠 비중을 과학적으로 설정하여, 긍정적이고 건전하고 진취적인 주류 가치관을 구현한다. 사회적 이슈이자 민감한 사안, 즉 과장된 악성 사건, 재난 사고 등을 집중적으로 전송하고, 조장하여, 사회적 공황을 야기해서는 안 된다.

(6) 서비스 규모에 맞는 인력으로 팝업정보 푸시 콘텐츠 관리 규범을 완비하고, 정보의 선별, 편집, 푸시 등의 작업 프로세스를 마련하며, 팝업정보 푸시는 반드시 사람의 심사를 거치도록 확보해야 한다.

(7) 사용자의 권익을 보장하고, 서비스 협의 등의 방식으로 팝업정보 푸시서비스의 구체적인 방식, 콘텐츠 빈도, 취소 경로 등을 명확히 고지한다. 사용자의 경험을 충분히 고려하고, 푸시 빈도를 과학적으로 계획하며, 일반 사용자와 회원 사용자에게 대해서 악의적으로 차별하여 전송해서는 안 된다. 사용자가 팝업창을 닫는 데에 대해 어떤 형태로든 방해하거나 영향을 주어서는 안 된다. 팝업정보마다 팝업정보 푸시서비스 제공자의 신분을 명확히 표시하도록 확보해야 한다.

(8) 이용자의 과몰입 유도, 과소비 등 법령에 위반되거나 윤리도덕에 위배되는 알고리즘 모델을 설치해서는 안 된다. 개인 맞춤형 팝업 서비스, 알고리즘을 이용한 정보 차단, 과도한 추천 등을 남용해서는 안 된다. 알고리즘을 남용하여 미성년 사용자를 대상으로 화상으로 진행해서는 안 되고, 심신의 건강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정보를 미성년자에게 전송해서는 안 된다.

(9) 광고 정보를 팝업 전송할 경우, 반드시 콘텐츠의 규정준수 심사를 진행해야 하며, 국가의 관련 법령을 위반해서는 안 된다. 식별 가능성을 구비해야 하고, "광고"라고 뚜렷하게 표시하며, 사용자를 명시해야 한다. 팝업 광고가 원클릭으로 닫힐 수 있도록 확보해야 한다.

(10) 팝업정보 푸시 방식으로, 악의적으로 유도하여 점프하게 하는 제3자 링크, QR코드 등의 정보가 나타나도록 해서는 안 된다. 팝업정보 푸시서비스를 통해 사용자의 클릭을 유도하여, 트래

픽 조작, 트래픽 가로채기를 해서는 안 된다.

제6조 인터넷 팝업정보 푸시서비스 제공자는 스스로 사회적 감독을 받아야 하고, 간편한 민원 신고 창구를 설치하여, 팝업정보 푸시서비스에 대한 민원 신고를 즉시 처리하여야 한다.

제7조 인터넷 업계 조직이 건전한 인터넷 팝업정보 푸시서비스 업계 규정을 마련하도록 권장 및 지도하고, 인터넷 팝업정보 푸시서비스 제공자가 법에 따라 서비스를 제공하고 사회적 감독을 받도록 촉구한다.

제8조 인터넷 정보 부서는 통신 주관 부서, 시장 감독 부서 등 유관 부서와 건전한 협력 감독 등의 업무 체제를 구축하여, 인터넷 팝업정보 푸시서비스 제공자가 법에 따라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감독·지도한다.

제9조 인터넷 팝업정보 푸시서비스 제공자가 본 규정을 위반한 경우, 인터넷 정보, 통신 주관, 시장 감독 등 유관 부서는 업무 범위 내에서 관련 법규에 따라 경고, 과태료 부과, 팝업 기능 일시 정지, 서비스 정지 등의 조치를 취한다.

제10조 본 규정은 2022년 월 일부터 시행한다.

互联网弹窗信息推送服务管理规定

(征求意见稿)

第一条 为了规范互联网弹窗信息推送服务,维护国家安全和公共利益,保护公民、法人和其他组织的合法权益,促进行业健康有序发展,根据《中华人民共和国网络安全法》《中华人民共和国未成年人保护法》《中华人民共和国广告法》《互联网信息服务管理办法》《互联网新闻信息服务管理规定》《网络信息内容生态治理规定》等法律法规,制定本规定。

第二条 在中华人民共和国境内提供操作系统、终端设备、应用软件、网站等服务的,开展互联网弹窗信息推送服务时应当遵守本规定。

本规定所称互联网弹窗信息推送服务,是指通过操作系统、终端设备、应用软件、网站等,以弹出消息窗口页面形式向互联网用户提供的信息推送服务。

本规定所称互联网弹窗信息推送服务提供者,是指提供互联网弹窗信息推送服务的操作系统、终端设备、应用软件、网站等所有者或者运营者。

第三条 互联网弹窗信息推送服务应当遵守法律法规,坚持正确政治方向、舆论导向和价值取向,弘扬社会主义核心价值观,推送向上向善的优质弹窗信息内容,发展积极健康的网络文化。

第四条 互联网弹窗信息推送服务提供者应当落实信息内容安全管理主体责任,建立健全信息内容审核、生态治理、网络安全、数据安全、个人信息保护、未成年人保护等管理制度。

第五条 互联网弹窗信息推送服务应当严格遵守下列要求:

(一) 传播正能量,弘扬社会主义先进文化;积极推送向上向善的内容,用社会主流思想价值和道德文化滋养人心、滋润社会。

(二) 不得推送《网络信息内容生态治理规定》明确的违法和不良信息,特别是恶意炒作娱乐八卦、绯闻隐私、奢靡炫富、审丑扮丑等违背公序良俗内容;不得关联某一话题集中推送相关旧闻,恶意翻炒。

(三) 未取得互联网新闻信息服务许可,不得弹窗推送新闻信息;弹窗推送信息涉及其他互联网

信息服务，依法须经有关主管部门审核同意或者取得相关许可的，应当经有关主管部门审核同意或者取得相关许可。

(四) 弹窗推送新闻信息，应当严格依据国家互联网信息办公室发布的最新版《互联网新闻信息稿源单位名单》执行，不得超范围转载，不得歪曲、篡改标题原意和内容，保证新闻来源可追溯和新闻信息真实、客观、全面。

(五) 提升弹窗推送信息多样性，科学设定新闻信息和垂直领域内容占比，体现积极健康向上的主流价值观；不得扎堆推送、炒作社会热点敏感事件，渲染恶性案件、灾难事故等，引发社会恐慌。

(六) 配备与服务规模相适应的人工力量，健全弹窗信息推送内容管理规范，完善信息筛选、编辑、推送等工作流程，确保弹窗信息推送必须经过人工审核。

(七) 保障用户权益，以服务协议等方式明确告知用户弹窗信息推送服务的具体方式、内容频次、取消渠道等；充分考虑用户体验，科学规划推送频次，不得恶意对普通用户和会员用户进行差别频次推送；不得以任何形式干扰或者影响用户关闭弹窗；确保每条弹窗信息明确显示弹窗信息推送服务提供者身份。

(八) 不得设置诱导用户沉迷、过度消费等违反法律法规或者违背伦理道德的算法模型；不得滥用个性化弹窗服务，利用算法屏蔽信息、过度推荐等；不得滥用算法，针对未成年用户进行画像，向未成年用户推送可能影响其身心健康的信息。

(九) 弹窗推送广告信息，必须进行内容合规审查，不得违反国家相关法律法规；应当具有可识别性，显著标明“广告”，明示用户；确保弹窗广告一键关闭。

(十) 不得以弹窗信息推送方式呈现恶意引流跳转的第三方链接、二维码等信息；不得通过弹窗信息推送服务诱导用户点击，实施流量造假、流量劫持。

第六条 互联网弹窗信息推送服务提供者应当自觉接受社会监督，设置便捷投诉举报入口，及时处理关于弹窗信息推送服务的公众投诉举报。

第七条 鼓励和引导互联网行业组织建立健全互联网弹窗信息推送服务行业准则，督促互联网弹窗

信息推送服务提供者依法依规提供服务，接受社会监督。

第八条 网信部门会同电信主管部门、市场监管部门等有关部门建立健全协作监管等工作机制，监督指导互联网弹窗信息推送服务提供者依法依规提供服务。

第九条 互联网弹窗信息推送服务提供者违反本规定的，由网信、电信主管、市场监管等有关部门在职责范围内依照相关法律法规采取警告、罚款、暂停弹窗功能、停止服务等措施。

第十条 本规定自2022年 月 日起施行。